

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가. 제 출 자: 서울특별시
- 나. 의안번호: 제1142호
- 다. 제출일자: 2023. 8. 14.
- 라. 회부일자: 2023. 8. 21.

2. 제 안 사 유

-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 명확화(안 제2조제2항).
- 나.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신설(안 제2조제4항).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환경분쟁조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원안동의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3. 6. 15.~7. 5.) 결과: 붙임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”) 개정사항('23.3.27) 등을 반영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안 제2조는 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로 제한하고, 위원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는 위원의 연임 가능 조항은 있으나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임도 가능한 상황인바,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임 규정의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.

또한, 동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두고 있지 않아 회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위원장 부재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2조의2와 제3조는 위원 해촉과 위원회 사무처리 등의 규정에 대해 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를 토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<안 제2조(위원회 구성)의 주요 내용>

현행	개정안
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	② ----- 한 차례만 연임----- ----- 전임자 임기-----.
<신 설>	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